

**안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안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10-37
----------	-------

제출년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내 안산시 소유의 제3토취장이 ASV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 제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일부를 제척하고,
-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철거계획을 반영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이 제안됨에 따라 이를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며,
-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학교 중 대학**

□ 주요내용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시설명	시설의 종류	시설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양대학교 ERICA	학교	1,314,791.1	감) 188,236.6	1,126,554.5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
 - 토지이용계획 조서

시설명	토 지 이 용 계 획					비고
	구분	면 적 (㎡)			비율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교 (한양 대학교 ERICA)	계	1,314,791.10	감) 188,236.60	1,126,554.50	100.0	
	교사부지	449,108.50	감) 186,044.08	263,064.42	23.4	
	운동장부지	91,740.0	증) 4,089.73	95,829.73	8.5	
	도로부지	135,793.37	감) 688.29	135,105.08	12.0	
	녹지부지	379,742.53	감) 12,955.18	366,787.35	32.6	
	주차장부지	74,276.70	증) 7,361.22	81,637.92	7.2	
	도시첨단산업단지	184,130.0	-	184,130.00	16.3	

- 건축계획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층수)	비고
기정	8.38	33.44	18층 이하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변경	11.15 증) 2.77	46.31 증) 12.87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 위치도

